

#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

## 1. 제출자 및 제출경과

- 의안번호 : 889
- 제 안 자 : 김용연 의원(외 11명)
- 제 안 일 : 2019년 8월 7일
- 회 부 일 : 2019년 8월 13일

## 2. 제안이유

- 「협동조합 기본법」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은 주로 지역주민의 권익·복지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경제·사회적 순기능 역할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재정상황이 열악한 바,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시세 감면을 강화함으로써 사회적협동조합의 활동을 촉진하고,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.

## 3. 주요내용

- 「협동조합 기본법」 제85조 및 제105조의2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및 동법 제114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 대해서는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 산출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함.(안 제11조제2항)

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, 「협동조합 기본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 사항 없음(비용추계 비대상).

다. 입법예고 : (2019.8.19.~8.26.) 결과 : 의견 없음.

## 5. 검토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「협동조합 기본법<sup>1)</sup>」에 따라 인가를 받은 ‘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(이하 “사회적협동조합 등”이라고 함)’에 대한 현행 부동산취득세(2013.8월), 법인지방소득세(17.1월) 감면(산출세액의 50%)에 더하여, 주민세 재산분·종업원분 산출세액의 100분의 50을 추가로 감면(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)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11조제2항).

※ 사회적협동조합이란, 지역주민의 권익·복리 증진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및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비영리 협동조합으로써, 서울시의 경우 주로 교육·사회복지 등 공공서비스를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.

### 〈 용어 정의 규정 〉

#### 「협동조합 기본법」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~ 2. (생략)

3. “사회적협동조합”이란 제1호의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·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말한다.

4. “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”란 사회적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3호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의 연합회를 말한다.

#### 1) 「협동조합 기본법」

- 제85조(설립인가) ①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인가를 받아야 한다.
- 제105조의2(협동조합, 비영리사단법인 및 법인등의 조직변경) ① 다음 각 호에 따른 조합 또는 법인은 소속 구성원 전원의 동의에 따른 총회의 결의로 이 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그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. 이 경우 기존의 조직변경대상법인과 조직이 변경된 사회적협동조합은 권리·의무 관계에서는 같은 법인으로 본다.
  1.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
  2. 「민법」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
  3. 「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」에 따라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 「민법」 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
  4. 법인등⑦ 조직변경대상법인은 제1항에 따른 총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에 대하여 인가를 받아야 한다.
- 제114조(설립인가 등) ①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원 자격을 가진 셋 이상의 사회적협동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

○ 서울시에 소재한 사회적협동조합 등은 402개소이나, 조합의 영세성으로 인해 본 조례에 따른 감면효과는 미미한 실정임.

※ 한편 자치구(강남구 제외)에서는 '구세 감면 조례로 조합 설립·증자등기에 대한여 등록면허세(구세)를 세율적용 구간 내 최저세율로 인하(112,500원→40,200원)하여 감면해오고 있음.

〈서울시 사회적 협동조합 등의 업종별 현황〉 (2019.7월말 기준)

구분	교육	보건·사회복지	예술출판 등	도소매·제조 농어업등	기타	합계
개소(%)	105(26.1)	101(25.1)	42(10.4)	49(12.2)	105(26.1)	402(100)

※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5개소 포함

〈 사회적 협동조합 지방세 감면 실적 〉 (단위 : 백만원)

구분		'17년	'18년	'19년
시세	취득세	-	15	-
	지방소득세	-	1*	1(추계)
구세	등록면허세	-	12	-

※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감면신설('17.1월) 후 최초 사업연도 개시분부터 감면액 발생

※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감면 실적 없음.

○ 본 조례안은 「지방세특례제한법<sup>2)</sup>」의 위임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 등에게 기존 감면 세목\*에 더하여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을 추가로 감면(산출세액의 50%)하고자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여지며, 감면 규모는 7개소에 연간 3천 5백만원으로 추계되고 있음(비용추계서 참조).

\* 기존 감면 세목: 부동산취득세, 법인지방소득세

※ · 주민세 재산분: 사업장 연면적 330㎡ 초과시 과세

· 주민세 종업원분: 월평균 급여 1억 3,500만원(종업원분) 초과시 과세

2)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4조(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)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,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(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"지방세 감면"이라 한다)를 할 수 있다. 다만, 이 법(제3장 지방소득세 특례는 제외한다)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은 추가로 확대할 수 없다.

1. 서민생활 지원,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, 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

2. 특정지역의 개발, 특정산업·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

**<사회적협동조합 주민세 납부실적>**

구분	주민세 재산분		주민세 종업원분		합계	
	법인수	금액	법인수	금액	법인수	금액
2016	3	718	1	15,703	4	16,421
2017	4	751	2	37,192	6	37,943
2018	5	1,854	2	68,702	7	70,556

**<조례안 주요 개정 내용>**

현 행	개 정 안
<p>제11조(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면)</p> <p>① 「협동조합 기본법」 제85조 및 제105조의2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(이하 이 조에서 “사회적협동조합”이라 한다)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.</p> <p>1. 사회적협동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</p> <p>2.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</p> <p>3.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·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</p> <p>② 사회적협동조합 및 「협동조합 기본법」 제114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(이하 이 조에서 “사회적협동조합등”이라 한다)에 대해서는 <u>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50</u>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에</p>	<p>제11조(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면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_____ _____ _____ _____ <u>법인지방소득세 및 주민세 재산분·종업원분 산출세액의 100분의 50</u>을 각각 _____</p>

현 행	개 정 안
<p>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<u>법인지방소득세</u>를 추징한다.</p> <p>1. 2. (생략)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---- 세액을 -----.</p> <p>1. 2. (현행과 같음)</p>

- 본 개정조례안은, 서울특별시세의 감면을 통하여 열악한 재정상황에서 지역 주민의 권익·복리 증진 등 공익성이 강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사회적협동조합 등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으로, 민간 부분의 공공서비스 기능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.
- 다만, 본 개정조례안에 따른 추가 세목까지 감안할 때, 2018년 기준 사회적협동조합 등에 대한 시세 감면 규모는 5천 1백만원\* 수준으로, 정부의 경제 민주화 및 일자리 창출 정책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확장추세에 있어, 시세 감면 규모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 예상되는바,
  - ※ 사회적협동조합 등: 2016년 10월 기준 173개소 → 2019.7월 기준 402개소로 증가
- 복지지출 확대 등 세출 수요의 지속적인 확대에 의한 지방재정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세지출 예산제도나 감면 조항의 일몰제 등 제도 시행으로 지방세 감면을 축소 또는 폐지하려는 현 추세를 감안해 볼 때, 감면 확대에 대한 필요성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.
  - ※ 지방세지출 예산제도: 지방세지출을 지방예산제도의 범위내로 흡수하여 세입·세출과 동일하게 예산과정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지방재정운용의 투명성,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제도(‘지방세지출 예산제도 도입방안’, 한국지방행정연구원, 2007.12.)

전문위원	김태한	입법조사관	최석훈
------	-----	-------	-----